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권 신설 등 〉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76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권 신설 등	2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13.

3. 회부연월일 : 2026. 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점수 합산의 오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하여 관할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권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고, 해당 결과가 학교폭력 행위에 비추어 가볍거나 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심의위원회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③ ~ ⑤ (생략) <u><신설></u>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⑥ (생 략)

<신 설>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생 략)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
기구 구성) ① ~ ③ (생 략)

내용과 결정 이유를 적은 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결정서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보고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3조의2(재심의) ① 교육감은 제13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내용이 학교폭력 행위에 비추어 가볍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조치내용 및 결정 이유를 적은 조치결정서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명백한 하자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재심의 요구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현행 제13조의2와 같음)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
기구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u>제13조의2</u>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⑤ ~ ⑨ (생략)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⑦ (생략)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⑨ ~ ⑰ (생략)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 ② (생략)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u>제13조의2</u>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음) ④ ----- ----- ----- ----- -----제 <u>13조의3</u>----- ----- -----.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전에 <u>그 조치 내용을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u>----- ----- ----- -----. ⑨ ~ ⑰ (현행과 같음)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3조의3 ----- ----- ----- ----- ----- ----- -----.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7조¹⁾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결정에 따라 결정된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구하며, 학교장은 요구받은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상급기관인 교육감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이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결과가 학교폭력 행위에 비추어 가볍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급기관인 교육감이 심의위원회의 하자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하자를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행정쟁송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교육감에 대한 심의위원회 재심의 요구권 부여에 대해 학교폭력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⑧ (생략)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 ⑰ (생략)

사건 당사자인 학생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사건의 관련자가 아닌 교육감이 당사자인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의사와 상관 없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 결과를 시정할 뿐만 아니라 재심으로 인해 조치 결정이 지연되는 등 오히려 학생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사건 당사자인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의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²⁾받을 수 있음.

둘째, 재심의 요구대상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및 과도하게 중한 조치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의 경우 피해학생 권익 측면에서, 과도하게 중한 조치의 경우 가해학생 권익 측면에서 각각 시정절차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셋째, 재심의의 제척기간 규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재심의 요구기한을 달리 규정하지 않고 교육감이 언제든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심의위원회 결정의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쟁송 제기 후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 양 절차 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음.

- 참고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재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에서도 법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적안정성을 위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음.

[제척기간 관련 입법례]

구분	입법례
<u>행정심판</u>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행정소송</u>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는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부변기간으로 한다.
<u>재심의</u>	「국가공무원법」 제82조(징계 등 절차)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72조(징계 등 절차)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시·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제1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넷째, 교육감이 심의 하자 발생의 책임자에 대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에 대해 그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³⁾에 따라 교육감에게 소속 직원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에 대한 징계 요구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징계 등 요구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둘 경우 중복규정으로서 그 실익이 낮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저해 우려, ②불복수단 중복, ③심의결과의 법적안정성 문제, ④재심의 사유의 불명확성, ⑤결정 지연에 따른 피·가해 학생의 법적지위 불안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87

관계 부처	의견
교육부	○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권한과의 충돌 우려, 재심으로 인한 처분 지연 시 관련 학생에 대한 불이익 증가, 심의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법률에서 규정된 타 불복수단(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의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 필요 - (심의 위원회의 권한 침해 우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를 결정하면, 교육장은 위 결정에 기속되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하는바(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및 제9항), 가해학생조치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은 심의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청(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기관임 - (처분지연에 따른 학생 피해)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결정을 의결하더라도 교육장이 처분을 하기 전에 별도의 추가절차*가 필요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최종 처분은 지연될 수 밖에 없는바, 이 경우 피해 학생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가해학생으로서도 불안정한 지위 상태가 계속되게 됨 * “심의위원회가 교육감에게 조치결정서 등을 통보하는 절차”, “교육감이 재심의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재심의의를 요구하는 절차”,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의를 하는 절차” 등 - (피해학생의 불복수단 이미 존재) 교육장의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도 행정심판 청구(제17조의2), 행정소송 제기(제17조의3)가 가능하므로, 수위가 낮은 가해학생 조치의 부당성,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등은 위 불복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사법기관(또는 준사법적 기구)에서 해결 가능
경상북도 교육청	○ 교육감이 위원회 소집 및 재심의를 강제할 수 있다면, 학폭예방법(제17조 제1항, 제9항)에서 교육장이 심의위원회 의결에 기속되

	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속력 집행 의무’를 상급기관이 우회적으로 정지시키고 무효화하는 기형적인 통제구조를 만들게 됨 ○ 재심의 사유와 관련, ‘지나치게 가볍다’는 객관적인 판단 지침을 주지 못하고, ‘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는 자의적인 법 해석을 초래할 수 있어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 민원인과 행정청의 이견으로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경북교육청) - 교육감과 교육지원청은 본연의 교육적 회복 기능은 완전히 상실한 채, 오직 피해학생 측의 빗발치는 민원, 징계 및감사요청, 언론 보도 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가볍다”, “명백한 하자”라는 핑계로 심의위원회에 끝없는 재심의를 강제하는 수동적인 징계 요구 대상으로 전락하게 됨, 이는 국가 행정력을 사적 분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공권력의 붕괴로 이어짐(경북교육청) ○ 독립된 위원회가 관련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출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확정한 조치를,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독임제 행정관청이 서류만을 전달받아 사후에 재평가하도록 하는 구조는 합의제 기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임 ○ 위원회가 생산한 회의록 등의 관련 자료는 비밀을 유지할 민감한 정보임. 사후 감독이라는 명목으로 상급 관청에 모두 제출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감시하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우려 큼
서울시 교육청	○ 관련 학생들의 법적 지위 불안정과 보호·선도 공백 우려 ○ 상급 기관의 일반적 관리·감독권 이탈 -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상급 행정기관으로서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조직 운영, 인사, 예산 집행등)만 있을 뿐, 개별 사안의 구체적 심의 내용에 직접 개입할 수 없으므로 특정 처분에 대해 상급 기관이 직접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임 ○ 심의위원회 독립성 훼손,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와의 중복
경기도 교육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불복절차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재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심의위원회가 교육감에게 ‘조치결정서, 조사 결과 보고서, 회의록’ 등을 제공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비밀 누설’에 해당

	○ 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재심의, 재심의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거칠 경우 장시간 피·가해 학생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게 됨 ○ 재심의 요건과 관련하여 조치결정이 지나치게 ‘가벼운’ 경우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도 동일하게 포함해야 함 ○ 서면으로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조치 수준의 과중 여부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
대구광역시 교육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의결기관인데 교육감이 심의 결과에 개입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의 소신 있는 결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한번 결정된 조치 사항이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로 번복될 수 있다면, 가·피해 학생은 행정절차 및 결과 등을 신뢰할 수 없게 됨. ○ 현행 구제 절차(행정심판 등)를 활용하는 것이 교육 행정의 혼란을 막을 수 있고, 조치 결정 통보 전 간사 및 내부 검토 과정을 통해 단순 계산 오류 등을 걸러내는 내부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의결기관인데 교육감이 심의 결과에 개입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의 소신 있는 결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한번 결정된 조치 사항이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로 번복될 수 있다면, 가·피해 학생은 행정절차 및 결과 등을 신뢰할 수 없게 됨. ○ 현행 구제 절차(행정심판 등)를 활용하는 것이 교육 행정의 혼란을 막을 수 있고, 조치 결정 통보 전 간사 및 내부 검토 과정을 통해 단순 계산 오류 등을 걸러내는 내부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함
강원 특별자치도 교육청	○ 현행 불복절차와의 중복에 따른 행정절차 과중 우려, 심의 지연에 따른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2차 피해 가능성, 심의 결과의 안정성 저해 및 법적 분쟁 장기화 가능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침해 가능성 ○ 현행 불복절차와의 중복에 따른 행정절차 과중 우려, 심의 지연에 따른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2차 피해 가능성, 심의 결과의 안정성 저해 및 법적 분쟁 장기화 가능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침해 가능성
광주광역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저해 우려, 심의위원 및 담당자

교육청	의 위축 우려, 재심의 제도 남용 가능성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연 우려, 행정부담 증가 및 분쟁 확대 가능성, 재심의 요구 기준의 불명확성, 현행 권리 구제 제도와의 중복성
제주 특별자치도 교육청	○ 이미 행정심판 등 충분한 불복절차 있음 ○ 처분 결정 지연으로 피해학생의 2차 피해 발생 우려
세종 특별자치시 교육청	○재심의 절차 도입에 따른 기존 제도와의 기능적 중복 가능성, 심의 위원회 판단의 독립성 저해 우려, 행정처리에 대한 과도한 부담 발생
충청북도 교육청	○ 모든 사안의 회의록과 사안조사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상시 보고하는 체계는 방대한 행정력 소모의 우려가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시도 교육청 단위로 광범위하게 수집·축적됨에 따라 데이터 관리의 행정적 부담 및 유출 리스크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심의 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과정의 지연 ○법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권익구제 절차의 혼선, 공정성 저해 및 방어적 심의 초래
경상남도 교육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는 현행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요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심의 개최 요청 건수가 2,000건을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또한 하나의 사안에서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조치 대상 학생 수 및 조치 건수는 심의 개최 요청 건수보다 더 많은 상황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심의위원회가 조치 요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모든 조치 내용을 교육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되는 사안의 규모가 매우 방대해져 실질적인 검토나 관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행정 절차만 추가될 뿐 실질적인 정책적·행정적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음.
공주 교육지원청	○ 심의 결과가 ‘가볍거나 무겁다’는 판단기준은 본질적으로 가치판단의 영역이며, 이를 객관적·정량적 기준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를 이유로 재심의 요구를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저해, 행정청 내부 판단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 확대, 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을 약화시킬 우려 있음 ○ 징계의결 요구 규정은 합의제 심의기구 위원의 위축 효과. 적극적·교육적 판단보다 책임 회피 중심의 소극적 결정 유도, 학교폭력 업무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 있음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제도라는 이미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통제 장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교육감의 내부적 재심의 요구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중적 통제 구조를 형성하여 절차의 중첩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 있음 ○ 심의 결과가 ‘가볍거나 무겁다’는 판단기준은 본질적으로 가치판단의 영역이며, 이를 객관적·정량적 기준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를 이유로 재심의 요구를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저해, 행정청 내부 판단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 확대, 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려 있음 ○ 징계의결 요구 규정은 합의제 심의기구 위원의 위축 효과. 적극적·교육적 판단보다 책임 회피 중심의 소극적 결정 유도, 학교폭력 업무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 있음
아산 교육지원청	○ 점수 합산 오류 등 ‘하자 발생이 명백한 경우’는 기존에 존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정정가능하며, 오기의 경우 조치결정통보서 정정을 통해 하자 치유 가능함. ○ ‘하자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데, 처분청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교육감이 혼자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됨. ○ 특히 재심의 요건 중 ‘조치 내용이 학교폭력 행위에 비추어 가벼운’ 경우는 그 요건이 불분명하여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큼. ○ 점수 합산 오류 등 ‘하자 발생이 명백한 경우’는 기존에 존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정정가능하며, 오기의 경우 조치결정통보서 정정을 통해 하자 치유 가능함. ○ ‘하자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데, 처분청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교육감이 혼자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됨. ○ 특히 재심의 요건 중 ‘조치 내용이 학교폭력 행위에 비추어 가벼운’ 경우는 그 요건이 불분명하여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큼.

광주광역시 동부 교육지원청	○ 점수 합산 오류는 간사의 확인절차 강화, 검증절차 마련을 통해 개선이 가능함. 특정사안에서 발생한 예외적 일부 사안을 근거로 전체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재심의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입법의 일반성과 비례성 측면에서 부적절 ○ 심의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에 대한 행정권의 개입 문제, 위원회의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사건 처리 기간 장기화, 교육청의 행정부담 증가 등
광주광역시 서부 교육지원청	○ 심의위원회 자율성 심각하게 침해, 조치가 가볍다는 기준은 매우 주관적임, 심의위원들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들이 극도로 방어적이고 기계적인 심의를 하게 됨 ○ 사안의 최종 종결이 지연되면서 관련 학생들이 장기간 분쟁 상황에 놓여 학생들의 일상회복을 방해할 우려